

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5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2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12 | |
| 다. 상 정·의 결 일 자 : 1999. 7. 22 |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 |

2. 개정이유

- ①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
재산세: 종합토지세가 5년간 100분의 50이 경감되나, 휴·폐업 업체를
인수하는 대체 입주자는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어, 최초 입주자
와의 형평을 기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
규정에 의거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① 농공단지(율대, 회화)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
입주하는 자도 최초 입주하는 자와 같이 재산세·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
가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50%를 경감한다.(안 제24조의 4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① 농공단지에 최초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
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 등이 면제되나
② 휴·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 업체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
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어
③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감면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를
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
④ 경상남도표준안 근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
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9. 7. 2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